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장 혜련 | 제주대학교 사학과
maggil080@yahoo.co.kr

I. 머리말

제주유민(濟州流民)은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어가는 조선중기¹⁾ 즉 15~17세기에 발생하였다. 유민²⁾이란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곳을 자의적으로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을 말한다. 유민의 발생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여러 모순 속에서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롯되는 것이다. 유민의 발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체는 매우 온건한듯하지

-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서울: 탐구당, 1998) 1쪽에서는 조선시대 중기를 15세기 말엽에서 17세기 말엽까지 즉 성종 후반에서 숙종 전반기에 이르는 약 2세기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본연구자는 제주도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어가는 15세기 초기~17세기를 조선중기를 보았으며, 이 시기 제주사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유민’이란 유이민(流移民), 유망민(流亡人), 유맹인(流氓人), 유랑민(流浪民), 유이인(流離人), 기유민(飢流民), 유인(流人), 유호(流戶), 유락(流落), 유우(流寓), 유구(流寇), 유적(流賊) 등으로 칭하고 있다. 정형지, 「조선초기 유민연구」(승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43쪽.

만 그것이 갖는 의미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³⁾ 그러므로 조선정부에서는 유민의 발생과 그들에 대한 안집(安集) 즉 유민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 동안 유민에 관한 연구가 다수⁴⁾ 있었지만 조선 초기나 18·19세기 농민유민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져 왔다. 더욱이 제주유민에 관한 연구로는 김태능(金泰能)의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考)』⁵⁾와 한영국(韓榮國)의 「두모악고(頭毛岳考)」⁶⁾가 있을 뿐이다. 김태능은 ‘두모악’이라고 하는 제주유민의 존재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문제제기에 불과한 연구였고, 제주유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한영국의 「두모악고」에서는 ‘두모악’을 하나의 인구 군으로 파악하여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분석을 통하여 제주유민의 동향을 추정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의 미비점과 필자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제주유민의 성격을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유민의 대책으로 제주에 시행된 출륙금지의 정책은 제주 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억압과 굴레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주유민과 출륙금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제주유민의 성격을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

3) 정형지,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 논총』 72(1996), 185쪽.
 4) 양원석, 「려말의 유민문제- 특히 대몽관계를 중심으로」 『이병도박사화갑 기념논총』(서울: 일조각, 1956)
 신정희, 「조선전기 유민문제」 『역사교육논집』 2집(1981)
 배항섭, 「임술민란 전후의 평화적 활동과 그 성격」 『한국사 연구』 60 (1988)
 최영식, 「18세기 전반기 농민들의 유리 투쟁과 그 역사적 의의」 『역사과학』 133(1990)
 한명기, 「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 『조선정치사』 상(청년사,1992)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부유집단을 중심으로」 『사총』 40·41(1992)
 변주승, 「18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전주사학』 3(1995)
 5) 김태능,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考)』(제주: 세기문화사, 1982)
 6) 한영국, 「두모악(頭毛岳考)고」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서울: 지식산업사, 1981)

서 총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 제주유민과 출륙금지에 관한 연구를 재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유민은 조선정부의 제주에 대한 중앙집권 영향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정치·경제·사회 의 전반적 상황을 언급하여 제주유민의 발생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주를 떠난 제주유민들이 어디로 정착되어 갔는지 그 실태를 살펴 그들이 또한 해당지역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 시켜나가는지 분석하겠다. 결론적으로 조선정부가 취했던 제주유민에 대한 정책이었던 출륙금지정책에 대하여 규명하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과 실태

1.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

조선시대 제주역사는 크게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계속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속에 전개되어 갔다. 요컨대 조선정부는 제주지방에 대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였고, 제주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 어느 정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향촌사회에 대한 이상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중앙집권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종래 4면 17현의 행정단위에서 삼읍(三邑)체제로 개편된다. 『태종실록』 태종 16년(1416)⁷⁾ 기

7)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6일 정유조. 「濟州都安撫使吳湜、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縣.(中略)自今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咸德縣·金寧縣、西道貴日縣·高內縣·厓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冤山縣·狐兒縣·洪爐縣等三縣; 西道縣監以大靜縣爲本邑, 屬以狽來縣·遮歸縣等二縣, 而兩處縣監, 如有公事, 不敢獨斷, 則以安撫使議送決絶後, 辭緣略舉呈報, 以憑黜陟. 若進上馬匹刷出及年例馬籍等事, 縣監以所管馬匹齒毛色呈報, 安撫使巡行親監, 考察施行. 所管軍官軍人內千戶、百戶則以差定年月久近差等, 縣監分揀呈報安撫使, 相考依舊差下, 以爲恒式如何.」

록을 보면 그 동안 제주도의 행정구조의 폐단과 불편함을 배려하여 삼읍 체제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정부의 제주에 대한 행정적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체제개편의 하나로, 즉 1목 2현 체제인 제주목(濟州牧)과 대정(大靜)·정의(旌義) 두 현(縣)의 지방행정구조가 편성되었던 것이다. 행정개편이 이루어지자 행정관리들이 속속 제주에 파견되기 시작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목에 정3품의 목사(牧使)를 파견하고 두 현에는 종6품의 현감(縣監)을 파견하였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의 영향력, 즉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제주의 수령에게는 행정적인 목사의 역할과 군사적 역할인 관찰사의 권한까지 위임하여 두 현을 관할케 하였다. 따라서 제주에 파견되는 수령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성격 즉 목사와 관찰사를 겸하며, 두 현의 현감들을 총괄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더욱이 조선정부는 제주지역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목사 즉 수령을 통하여 제주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를 수행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한 문제였으며 이는 곧 중앙집권의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은 세종대에 이르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나타났다. 조선정부는 제주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더욱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세종 원년(1419)에 도안무사(都安撫使)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지(田地)의 손실담험(損失踏驗)⁹⁾역시 세종 3년(1421)에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관 및 대정·정의현감이 전지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를 하면 도안무사겸목사(都安撫使兼牧使)가 순행하여 점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수령

8) 김동전,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 제주도사연구회, 1991), 47~48쪽.

9) 손실담험법(損失踏驗法)이란, 생산량이 해마다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흉에 따른 수확의 손실을 10등분하여 손실이 2이면 조(組)에서 2분을 감하여 수세하며 수확이 8분 감할 때에는 조의 전액을 면제하는 세법이다. 손실의 정도는 수령·감사의 위관(委官)·수령관(首領官)에 의해서 삼심(三審)이 행해졌다. 고창석 외, 『역주 탐라지』 제주목 전결조 (서울: 푸른역사, 2002) 57쪽.

의 권한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방편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제주 민에 대한 중앙의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의 정치구조는 어느 지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양계지방이나 제주는 중앙 정치 무대의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족세력(士族勢力)보다도 향임세력(鄕任勢力)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토착세력¹⁰⁾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제주지역에는 토관직(土官職)¹¹⁾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도에서 토관의 위치는 중앙 수령의 권위보다 우월하였다. 그들은 지방 토착세력인데다 누구보다 제주의 실정에 밝았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의 수령들보다 제주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은 자신의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호들에게 제주의 상황과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는 토관들의 부당성과 이익을 눈감아 주는 것이었다. 토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령과 대항하면서도 때론 더 많은 이권을 위해 수령에게 아첨하기도 하였다. 그런 즉 그들의 관계는 외관상 서로 견제하는 세력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결탁하여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모순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제주 민들은 중앙집권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주 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책임자라 할 수 있는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토착세력인 토관이라는 이중적인 지배구조체제에서 이중의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¹²⁾

그렇다면 당시 대외적 정치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제주는 지리적 위

10) 이런 현상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일례로 고려왕조가 탐라국을 외관을 통하여 지배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배의 강도가 달랐으며, 또한 그 지배 대상도 일정한 영역들에 한정되었다. 그 나머지 문제들에 관하여는 지방토착 세력에게 일임되었던 것이다. 진영일,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탐라문화』 16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6), 165쪽.

11) 제주의 토착세력에게 토관직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충렬왕 21년(1295년)에 탐라를 제주로 고쳐 목사를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김동전,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60쪽.

치상 왜구(倭寇)¹³⁾의 소굴인 북구주(北九州)·평호도(平戶島)와 대마도(對馬島)·일기도(壹岐島)에 가깝고 왜구들이 중국으로 왕래하는 항해상에 위치하여 더욱 빈번하게 왜구의 침입을 받았다. 그 이유는 왜구의 주 침략 대상지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며 왜구들은 제주를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왜구의 침입에 대한 기록은 태종 1년(1401)에서 명종 14년(1559)까지 150여 년 동안 29차례나 침입할 만큼 그 빈도가 잦았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육지와 떨어진 제주의 왜구 침입은 문헌상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자주 침략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시기 왜구는 규모면에서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법에 있어서도 대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운반되는 진상품을 노려 공물선·공마선·진상품 수송선의 주 노략 대상이 되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왜선(倭船) 수십 척이 제주에 침입하여 객관(客館)과 민가(民家) 수십 호를 불사르고, 일곱 사람을 죽이고 10여 인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¹⁴⁾
- (2) 제주사람으로 진상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으니, 적변(賊變)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護衛)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¹⁵⁾

13) 조선시대에는 대 왜구정책(對 倭寇政策)의 성공으로 왜구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고려 말까지의 왜구를 전기왜구라 하고, 그 이후의 왜구를 후기왜구라고 한다. 전기왜구가 우리나라를 주요 약탈 대상으로 삼았음에 대하여, 후기왜구의 특징은 약탈 대상지를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전환하였고 그 구성원이 일본인 왜구뿐 아니라 중국인, 포르투갈인 등 국제적 혼성왜구로 되어 있다는데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김병하, 『을묘왜변고(乙卯倭變考)』 『탐라문화』 8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75쪽.

14)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22일 계사조 「倭船數十隻寇濟州, 焚客館及人戶數十, 殺七人, 虜十餘人而歸。」

15)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濟州人, 齎奉進上方物出來者, 爲倭賊所奪, 賊變寢息間, 請抄軍護涉. 賊倭殺掠而去, 臣聞此不勝

(3) 근자에 제주 공마선(貢馬船)이 올라올 때 적왜(賊倭)가 이를 살략(殺掠)하여 갔습니다. (중략) 전자에는 왕래하며 고기잡이하던 사람들이, 만약 왜노를 보고 ‘공상(供上)할 것이라.’ 일컬으면 오히려 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곧 약탈하고 또 이어 죽이니, 그 흉포함을 알만 합니다.¹⁶⁾

(4) 제주는 왜구가 통행하는 곳이어서 지난날에 추자도(楸子島)에서 여러 번 이를 얻었으니, 지금 삼포 왜노가 예전 살던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바다 가운데에 퍼져 있어 반드시 제주를 구략(寇掠)하기를 마지않을 것이니, 제주의 방어에 배 이상의 조치를 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¹⁷⁾

사료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은 왜선이 침입하여 객관과 민가 여러 채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10여 명을 사로잡아 갔으며, 제주민이 진상할 물건을 실어오다 왜적에게 빼앗겨서 군사가 이를 보호하여 바다를 건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주변 해안에는 언제든지 왜구들이 출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왜적이 출몰할지라도 공물로 진상할 것이라 하면 예전에는 범하지 않았는데 왜구들이 이제는 서슴없이 공마선(貢馬船)까지 침탈하는가하면 물건을 빼앗은 후 인명까지 해치는 흉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는 언제든지 왜구의 침략대상이 될 것이므로 제주지역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가 담겨있다. 간추린다면 제주부근의 해상에는 늘 왜구가 잠입(潛入)해 있어 언제든지 침범하여 민가를 약탈·방화·살인하는가 하면, 해로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과 무역하고 왕래하던 제주 민들에게 위협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명종 10년 6월(1555)에 발생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은 이전의 왜구의 규모

驚駭。」

16)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3월 29일 신유조 「近者濟州貢馬船上來時,(中略) 前者往來漁者, 若見倭奴, 稱 供上, 則尙不犯之。」

17)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17일 임인조 「濟州倭寇之所經行處, 曩於楸子島, 屢獲利焉. 今者三浦倭奴, 未入舊居, 則必遍處海中, 寇掠 濟州不已矣, 濟州防禦, 固當倍加措置。」

나 성격에 비해 다른 특징¹⁸⁾을 갖고 침범하고 있다. 이제 왜구는 단순한 침범이 아니라 왜란·왜변이라고 할 정도의 대규모화 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구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더욱더 경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을묘왜변의 결과로 중앙정부는 남해안 및 제주도의 방위체제를 강화하였고 비변사(備邊司)의 권한도 확대시켜 제주방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어시설에 동원된 병력은 제주 민만으로는 불가능하여 전라도에서 보충되기도 하였다.¹⁹⁾ 모든 장정은 물론이요 공(公)·사(私)노비에 이르기까지 군역에 동원되었으며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군량과 군포의 공출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는 날이 없었다. 심지어 남자 장정수가 부족해서 모자라는 군인의 수를 여자로 징발하여 보충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을 여정(女丁)이라 칭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남사록(南槎錄)』에 기록되어 있다.

본주의 성안의 남정은 5백이고, 여정은 8백이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대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를 골라 성위에다 내다 세워 여정이라고 하는데 삼읍이 모두 그렇게 한다.²⁰⁾

이처럼 여정의 존재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며 이는 방어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조선정부는 온갖 방어시

18) 김병하는 을묘왜변을 왜구의 성격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였고, 김동전은 을묘왜변은 단순한 약탈의 성격을 떠난 제주를 본거지로 삼으려는 전략적인 침략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김병하, 「을묘왜변고」, 76~77쪽.

19) 제주에 보내는 원병은 500명에서 선조 25년(1592)이후 300명으로 감원되었고, 호남 원병도 광해군 12년(1620)에 완전히 혁파 되어 제주 민에 의해 방어를 전담하기에 이르렀다. 김상욱, 「조선조 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 아병을 중심으로」 『담라문화』 16 (제주: 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원, 1996) 277쪽.

20) 『남사록』 권1, 9월 22일 병자조; 이증(李墾)의 (『남사일록』 숙종 5년 12월 초 8일)의 기록에서는 3만 4,980의 인구 중에 남정은 1만 5,140명, 여정은 1만 9,84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설을 구축하게 했고 백성들의 동원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므로 제주 민들은 왜구 침략으로 인한 방화·살인·약탈의 공포와 함께 힘에 겨운 물자부담과 부역을 견딜 수 없어 육지로 유망(流亡)·이산(離散)해 버렸다.

그러므로 조선중기 제주 민들은 안으로는 지배체제의 모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이중의 수탈을 당하고, 밖으로는 왜구의 침입에 따른 피해와 공포, 한층 강화된 방어에 대한 압박에 처해 있었으며, 이러한 내·외부적인 정치 현실은 제주유민 발생 배경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조선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바다에 접해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하기 힘든 지역 중 하나였다. 이시기 제주의 사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근(飢饉)과 흉황(凶荒)으로 이어졌고 제주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조선정부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취체제(收取體制)의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갔으며 그에 따른 수탈과 착취가 한층 고조되어 갔다. 당시 제주의 사회·경제생활은 조선정부의 수취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는데 중앙에서 의도한 정책이 시행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주의 수취제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체제로 운영되었다. 제주의 수취체제 운영은 조선정부의 큰 틀 속에 있었으나 제주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과 항목들이 창설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제주만의 특수한 수취체도로 시행되었다.²¹⁾

수취제도는 인민에 대한 각종 수취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세수취(賦稅收取)의 바탕이 되는 수세원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곡물을 부과하는 조세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역을 부과하는 요역이며, 호(戶)를 대상으로 하여 토산물을 부과하는 공물이다. 즉 이들은 중국의 조·용·조(租庸調) 세제를 모방한 것으로 국가 재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었다.

첫째, 제주도에서 전결세(田結稅)²²⁾는 정규적인 조세의 역할을 다

21) 양진석, 「18·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3), 101쪽.

22) 『제주읍지』 제주목 한전조. 밭(田)이 3,991결 92부 9속 논(畓)은 305결

하지 못하였다. 제주도의 농경조건은 다른 지방에 비해 아주 열악했으므로 수취방식 또한 달리 전개되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거두어들인 전결세는 액수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상납되지도 않아 전액이 제주소재 관청의 재정에 충당되었다.²³⁾

둘째, 요역(徭役)이란 특정 인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민호(民戶)에 부과되는 부역 노동이었다. 전근대의 국가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불특정의 민호에서 노동력을 징발하여 쓰는 수취제도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민호의 요역 부담은 정기적이지 않았으며,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요역은 전근대의 전시기에 걸쳐 존재하였다.²⁴⁾ 『탐라지(耽羅志)』계주목 전결조에 따르면 “제주도의 옛 규정에는 요역이 인정(人丁) 즉 장정에게만 부과하고 전결(田結) 즉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요역에 필요한 장정은 호(戶)를 구성하는 장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원되었으나 호가 경작하는 전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전결에 따른 방식은 취하지 않았으나 대신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소와 말의 사료나 땀감 등은 모두 민호에게 요역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요역으로 바치는 초(草)·시(柴)·탄(炭)·치(雉)·계(鷄)등의 물종은 잡역세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셋째, 제주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선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貢物)·진상(進上)²⁵⁾에 있어서의 품목의 다양함과 수량이 많이 책정

83부 9속이었다. 그러나 그중 민결(民結)로 조세가 부과되는 전의 실결은 24결 69부 8속이었으며 민답(民畝)은 29부 1속에 불과하여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나머지 논은 답한(畝漢)을 정해 농사짓는 관답(官畝)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23) 양진석, 「18·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109쪽.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조선중기 정치와 경제』, 379쪽.

25) 진상은 지방관이 국왕에게 의례적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것, 원래부터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 도 단위로 하여 지방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상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주현에 그 부담이 배정되고, 이것이 다시 민호에게 배정되었다. 공물은 납세의 하나로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 중앙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 각 주현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주현단위의 책임량도 역시 각 민호에 배정되었다.

되었고, 노역의 징발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갔던 점이다. 제주 민들은 말과 소, 꿀뿐만 아니라 바다와 산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생산물을 중앙정부에 바쳐야 했다.

조선정부가 들어와 제주에 공부(貢賦)가 시작된 것은 태종 8년(1408)년 시작되며 태종 9년(1409)부터 민호에게 부담하였다. 제주의 토산물인 마필(馬匹)로 하되 대호(大戶)는 대마 1필, 중호(中戶)는 중마 1필, 소호(小戶)는 5호가 합하여 중마 1필로 규정하였다. 그 품목을 말로 정한 것은 당시 공물 분정(分定)이 “그 지방의 생산물의 량에 따라 그 공부를 정한다(量地之產而定其貢).”라는 것으로 보아 그 지방의 생산물과 산출의 다소(多少)에 따라 공물을 나누어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상에 대해서는 『세종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진상의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구체적인 수량이나 운송방법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조선중기 진상에 관련한 사료는 김상헌의 『남사록』(1601)과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그 당시 제주 진상품의 종류와 수효 등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진상품의 주요 품목이었던 전복과 꿀에 대하여 두 사료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전복인 경우 추복 330첩, 조복 230첩, 인복 680첩, 오적어 680첩으로 나타나는데, 추복 4,230첩, 조복 265첩, 인복 1,065첩 오적어 1,111첩으로 진상의 양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꿀의 진상은 유자 1,051개, 감자 1,555개, 금꿀 3,420개, 동정꿀 1,090개, 산꿀 4,690개, 청꿀 1,040인데 반하여, 감자 10,010개, 금꿀 1,180개, 동정꿀 1,660개로 꿀은 그 종류에 따라 증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은 제주의 특산품 중의 하나로 고려 때부터 진상되었다. 『태조실록』에 여러 차례 진상 기록이 보인다. 『탐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탄일·동지·정조에 각 20필을 봉진하도록 되어 있고 연례적으로는 8필, 세공마로 100필을 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두 168필을 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진상하는 말 이외에 사적(私的)으로 말을 진상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진상품들은 제주의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품목들이다. 이외에도 예컨대 약재 및 산짐승 등의 진상·공물은 물론, 제주에서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는 진주, 앵무라, 무회목²⁶⁾ 등의 진상품을 무리하게 제주 민들에게 강요하였다. 따라서 진상품 종류의 다양함과 수량의 과다로 제주 민들에게 부과되는 진상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더구나 유민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액수는 줄어들지 않아 제주 민들은 더 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산물의 진상을 위해서는 특정 부역층이 필요했는데 이른바 그들을 6고역(六苦役)층라 하였다. 즉 목자역(牧子役), 과원직(果園直), 선격역(船格役), 담한역(番漢役), 포작역(鮑作役), 잠녀역(潛女役)이 그것이다. 이들은 주로 신량역천(身良役賤)계층으로 한번 6고역을 지게 되면 좀처럼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특히 포작역, 목자역, 과원직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포작인(鮑作人)은 주로 전복과 고기 등을 잡아서 진상하는 의무를 맡고 있었다. 포작인이 진상용 전복의 수량은 극히 많았고, 진상뿐만 아니라 관아에서 쓰이는 해산물들도 모두 담당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이 사리(私利)를 위하여 바쳐야 하는 수량 또한 몇 배나 될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포작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포작인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남사록』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포작배(鮑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에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고 역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徵斂)·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룰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 본주의 공안은 (중략) 삼읍의 포작으로부터 취하고 기타 해채(海菜) 및 수령이 봉송하는 수량은 이 한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도의 물력이 거의 여기에 없어진다.’²⁷⁾

26) 김희동 역, 『남사록』(제주: 영가문화사, 1992) 65쪽. 앵무라(鸚鵡螺): 앵무조개, 무회목(無灰木): 미역의 오래 묵은 뿌리.

27) 『남사록』 권1, 9월 22일 병신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의 일은 힘들고 어려워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웃의 흠어미라 할지라도 빌어먹는 거지가 될지언정 포작인의 아내는 되지 않으려 했다. 포작인이 채취한 모든 해산물이 본주의 공안에 진상되었으며, 수령들의 사사로운 수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제주의 생산물이 여기서 다 없어진다 할 만큼 포작의 고통을 큰 것이었다.

목자역은 한번 맡게 되면 그 집안이 폐가망신될 지경이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동색마(同色馬)의 폐단이 심하였는데 말을 잃어버릴 경우 우마적(牛馬籍)에 기록된 말의 색깔과 동일하게 맞춰 보충해야하는 폐단이 있었다. 같은 색의 말을 민가에서 구입하려면 가격이 일정치 않아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다. 그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은 처자식을 팔고 자신이 머슴을 살거나 동생을 팔아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과원직의 경우에는 지방관이 민가의 감골을 진상한다고 청탁하고 수탈하는 폐단이 있었다.²⁸⁾ 『남사록』의 기록에는 그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매년 7~8월에 목사 군관이 촌가를 순시하며 굴유가 있는 곳에서 붓으로 하나씩 표시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가을이 되어 굴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수납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었거나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는 것이 있으면 집 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징수한다. 그렇게 못할 때에는 장부대로 바치도록 한다. 때문에 민가는 감골을 독약과 같이 보고, 채배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무가 있는 자는 그 나무를 잘라버려 민가에서 문책 받는 걱정을 없애려한다. 심지어 뜨거운 물로 고사시켜버렸다.²⁹⁾

진상용 굴을 거두는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1운 4·5통(桶)인데 백성들에게 20통 거두어들이니 제주 사람들의 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28) 김동전, 「제주도의 진상공헌에 대한 고찰-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제주사학』 창간호 (제주: 제주대학교인문대학사학과, 1985), 32쪽.

29) 『남사록』 권3, 10월 23일 정해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제주의 특산물 수량이 너무 많아서 제주사람들은 밤낮으로 이를 마련하려면 한사람이 열사람 몫 즉 '1인10역'을 감당하여야만 했다. 제주에서는 여자도 역을 져야 했고,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면역은커녕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역을 부담해야 하였다. 제주는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은 데 비하여 잡역(雜役)·잡세(雜稅)가 많아 제주 민이 져야 할 역이 너무나 많았다. 더구나 유민의 발생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액수는 줄어들지 않아 제주 사람들은 더 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조선중기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수반단 행정조직의 개편, 왜구의 빈번한 침입과 그에 따른 방어체제의 정비, 수취제도의 변화 등 중앙위주의 정책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고 당시 제주의 정치·사회·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결국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유민의 실태

제주유민의 발생은 우선 토지와 민(民)의 지배를 물적 토대로 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던 조선정부에서 민이 국가의 과약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또 민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체제의 기반에서 무단이탈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현실 부정,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랑 이후 행로는 굶어죽거나 거지·빈민·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민심소요·사회불안의 분위기 조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민은 잠재력을 가진 사회 유동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⁰⁾

유민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주사회는 인구 구조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구현상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³¹⁾ 왜냐하면 사회를 구

30) 정형지,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 논총』 72 (1996), 185쪽.

31) 이영구, 「17·18세기 인구규모와 그 변동의 특질」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87), 1쪽.

성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사회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인구 이동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가 사회구조 분석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의 호수와 인구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5세기 제주의 호수·인구수

연도	호(戶)				인구(人口)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합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합계
세종실록지리지	5,207	685	1,357	7,249 ³²⁾	8,324	2,073	8,500	18,897
세종1년(1419)	2,216	645	620	3,481 ³³⁾	-	-	-	-
세종8년(1426)	-	850	1,327	-	-	-	-	-
세종16년(1434)	-	-	-	-	-	-	-	63,474 ³⁴⁾
세종17년(1435)	-	-	-	9,935	-	-	-	63,093 ³⁵⁾
성종9년(1478)	-	-	-	9,400 ³⁶⁾	-	-	-	-

<표 1>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32) 『세종실록지리지』 권151, 전라도 제주목 「濟州牧：戶五千二百七，口八千三百二十四，旌義縣：戶六百八十五，口二千七十三，大靜縣：戶一千三百五十七，口八千五百。」
- 33)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4월 13일 정해조 「濟州牧居民二千二百十六戶，旌義縣六百四十五戶，大靜縣六百二十戶。乞移忠清道沿海 各官及全羅道各官雜穀(安) [按] 戶給豆、木麥、小豆種各一斗，以督耕田，以活民生。」
- 34)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2월 7일 경술조 「本州三邑，俱失農業，義倉雜穀及田稅不收者過半，且無救荒之物。今考三邑人丁之數，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名。」
- 35) 『세종실록』 권70, 세종 17년 12월 12일 기유조 「濟州三邑，人多地窄，民戶九千九百三十五，人口六萬三千九十三，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十八卜。地利有限，食之者衆，救荒之弊，無歲無之 無田業良人，各從自願，徙居陸地，私賤亦從本主，自願出陸。」
- 36)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8일 기해조 「其民則九千四百餘口。」

<표 1>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1425)에서 제주의 인구수는 18,897명으로 나타나는데 세종17년(1435)에는 69,093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10년 사이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자연 증가율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세종시기까지 제주에는 계속해서 육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 당시 제주에는 원(元)나라 유민이나,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유배당한 자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등 소외된 자들이 많이 들어 왔다. 또한 승려에 대해 균역이 없고 사찰에 대해서도 우대하였으므로 많은 승도(僧徒)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원나라 유민, 정치 망명자들, 승려, 범죄자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니 살 곳은 부족하고 인구는 넘쳐났다. 제주의 인구와 토지의 면적에 관한 내용은 『세종실록』 세종 17년(1435)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 세 고을에는 사람은 많은데 땅은 좁아서 민호(民戶)가 9천 9백 35호이요, 인구가 6만 3천 93명이며, 전지(田地)는 9천 6백 13결 48 짐 [卜]이므로, 토지의 이익은 한정이 있는데 밥 먹는 사람은 많아서, 흉년을 구제하는 폐단이 해마다 없을 때가 없으니. 전지와 직업이 없는 양민(良民)은 각기 자원에 따라 육지(陸地)로 옮겨 살게 하고, 사천(私賤)도 또한 본 주인을 따라 자원하여 육지에 나오게 하소서.³⁷⁾

세종대에 호구(戶口)가 9,400 호이고 인구는 63,000명 정도였다. 또한 식량은 자급자족되지 못하였으며 흉년이 들면 우마를 훔쳐 잡아먹으며 연명하는 도적들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세종 대 제주출신 고득종(高得宗)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고 있다.

제주는 땅이 좁고 민가(民家)가 조밀하여, 소와 말을 도둑질해 죽이면

37) 『세종실록』 권70, 세종 17년 12월 12일 기유조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十八卜. 地利有限, 食之者衆, 救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徙居陸地, 私賤亦從本主, 自願出陸.」

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자못 많사온데, 이로 인하여 말이 번식하지 않으니, 천하건대, 남의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는 온 집안을 육지에 내보내고, 그 주인이 있는 사천(私賤)은 본주(本主)에게 주되, 평민과 공천(公賤)들은 평안도나 황해도의 땅이 넓고 백성들이 드문 곳에 옮겨 두어서 안업(安業)하게 하소서.³⁸⁾

이러한 기록에서 세종 때 처음으로 제주민이 집단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도로 강제 이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제주가 땅이 좁고 사람은 많아 먹고살기 힘들니, 제주 민들을 육지로 나와 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유입·증가 현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 제주 민들은 상당수가 제주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나친 인구 증가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인구 감소 역시 정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토방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목장지대이자 감귤, 전복 등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공물의 생산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조선정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³⁹⁾

조선시대 주민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만 다른 지방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각 지방에서는 인구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지방 관청마다 인구의 이동은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을 통제한 것이다.⁴⁰⁾ 이처럼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을 금지했지만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던 고장을 떠나 다른 마을에 정착하는

38)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6월 20일 을묘조 「濟州地窄民稠, 盜殺牛馬, 以資其生者頗多, 因此馬不蕃殖. 請盜殺牛馬者, 舉家出陸, 其有主私賤, 授本主. 平民乃公賤, 移置平安、黃海地廣民稀之處, 使之安業.」

39)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주이」, 『탐라문화』 20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0), 57쪽.

40)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조.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⁴¹⁾ 이들이 곧 유민이다. 유민이란 ‘본래의 생활 근거지인 고향을 떠나 유이(流移)·방랑하거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사는 백성’을 말한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여도 조상 대대로 한 곳에서 삶을 이어가며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버리고 낯선 지역으로 떠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제주유민에 대한 호칭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그들을 두무악(頭無岳)이라 불렀는데, 두무악은 『남사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라산을 별칭이다.⁴²⁾ 그러나 한영국의 「‘두모악’고」에서는 “조선시대에는 두모악(豆毛岳) 또는 두독야지(豆秃也只)·두무악(頭無岳)·두무악(頭無惡)·두모악(豆毛惡)으로 불려진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인구 군으로 파악하여 부르고 있다. 원래는 한라산을 두무악(頭無岳) 또는 두모악(豆毛岳)이라고도 칭하는데 제주 민에 대한 속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15세기~17세기에 이르는 이른바 출륙제주도민(出陸濟州島民), 즉 원주지인 제주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주로 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김태능의 견해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해지방에 떠돌아다니는 제주 민을 두무악”이라 불렀는데 두무악은 비록 한라산의 별칭이었으나 이와 같이 호칭하였던 것은 해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들

41)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57쪽.

42) 漢羅山: 以云漢羅山人也, 頭無岳: 以其峰峰 階平也, 豆毛岳: 以山之連絡者 非一而峯頭有也 似貯水器也, 圓山: 以穹窿而圓也 김상현의 『남사록』에 한라산의 명칭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訓練院都正邊處寧來啓曰: 且沿海頭 無岳甚多, 濟州 漢(拿) [拏] 山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 或書頭秃也只 또한 『성종실록』 권 262, 성종 23년 2월 8일 기유조에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43) 한영국, 「‘두모악’고」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809쪽.

을 천시하여 불렀던 별명으로 언급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⁴⁴⁾ 제주유민에 대한 호칭은 ‘두목야’로 불렸으며 공식명칭으로 혹은 천시하여 불렀던 별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제주유민을 어떻게 불렀을까. 『성종실록』을 보면 제주유민의 출현은 성종 8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8월과 11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지방에, 「제주의 두목야(豆秃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⁴⁵⁾
- (2) 근년에 제주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목야지(豆秃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천여인에 이른다.⁴⁶⁾
- (3) 포작인(鮑作人)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다.⁴⁷⁾

『성종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 육지로 나간 제주유민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두목야’ 혹은 ‘두목야지’로 한라산의 별칭을 음역해서 부르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종실록』에서는 성종 8년(1477) 11월까지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성종 13년(1482) 기록⁴⁸⁾에서

44)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52쪽.

45)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 「今有人來言：道內泗川、固城、晉州地面，濟州 豆秃也只稱名人，初將二三船出來今轉爲三十二隻，依岸爲廬。」

46)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조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豆秃也只’，挈妻子乘船，移泊慶尙、全羅沿邊者，幾千餘人。」

47) 『성종실록』 권146,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鮑作人等自濟州而來，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48) 『성종실록』 권145, 성종 13년 윤8월 12일 무인조. 「濟州流移人民。」

는 제주의 떠돌아다니는 백성 즉 ‘제주유이인민(濟州流移人民)’이라 표기하며, 성종 14년(1483) 이후 기록에서는 제주유민에 대한 호칭을 ‘포작인(鮑作人)⁴⁹⁾이라 명명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주유민의 발생 당시에 그들에 대한 호칭은 ‘두모약’·‘두독야기’·‘포작인’으로 칭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포작인이란 명칭이 『조선왕조실록』 상에 자주 등장하고 제주유민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유민이 대부분 전복과 고기 등을 잡아 생활하였기 때문에 포작인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제주 유민들의 이동 실태는 어떠했으며, 그들의 정착 지역은 어느 곳이었을까. 위의 사료 (1)은 성종 8년 8월의 기록으로 처음 제주유민에 대한 기록이며 그들이 정착한 곳은 경상도의 사천과 고성, 전주지방이며, 그곳에 처음엔 2·3척의 소규모로 나타나더니 머지않아 비교적 대규모인 32척이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료 (2)는 같은 해 11월의 기록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불과 3개월 만에 제주유민의 수가 수 천여 인에 달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바닷가 부근의 순천(順天), 흥양(興陽), 낙안(樂安) 등지로 흩어졌으며 동래(東來), 부산(釜山), 울산(蔚山)의 해안에도 정착하고 있다는 기록들을 『성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⁵⁰⁾ 이로부터 12년 뒤 성종 20년(1489)에 경차관(敬差官) 이의(李諱)는 포작인의 역을 지고 정착하고 있는 전라도 내의 제주유민의 수가 부지기기천인(不知其幾千人)이라 지적하고 있다.⁵¹⁾ 심지어 중국 해랑도(海浪島)⁵²⁾에 들어간 자들도 20

49)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50)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10월 15일 기유조; 『성종실록』 권145, 성종 13년 윤8월 12일 무인조;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조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보인다.

51) 한영국, 「두모약고」, 810쪽.

52) 해랑도(海浪島): 만주 봉황현 태고산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대륙도 및 소록도.

여 명이 있었다. 『성종실록』 성종 23년(1492)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 신은 금년 5월 배를 타고 마포(麻浦)를 출발하여 평안도(平安道) 선천(宣川) 서쪽에 이르러 장록도(獐鹿島)등 섬을 지난 지 3, 4일 후에 해랑도에 정박했습니다. 섬 안에는 다섯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씨는 중국 사람을 닮았고 사슴 가죽을 입고 화전(火田)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며, 고기잡이[漁獵]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주민(住民) 20여구(口)가 새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섬에는 배 여섯 척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척은 항상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후망(候望)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⁵³⁾
- (5) 고익견(高益堅) 등의 초사(招辭)를 상고하니, 평안도(平安道) 및 제주의 백성으로 해랑도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합니다.⁵⁴⁾

이상의 사료 (4)와 (5)의 기록을 통해서도 전라·경상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랑도 지역까지 20여 가구의 제주유민이 정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거나 진상이 심해지면서 제주민의 유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물과 진상이 증대되던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제주유민은 하나의 정책과제로 논의될 만큼 대량 발생하게 되었는데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⁵⁾

본도의 백성은 생리(生理)가 매우 고통스러운데다가 남정(男丁)의 역(役)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삼읍(三邑) 사람으로 육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者) 매우 많다.⁵⁶⁾

53) 『성종실록』 권268, 성종 23년 8월 4일 임인조 「臣本年五月乘船發麻浦至平安道宣川, 西過獐鹿等島, 三, 四日泊于海浪島, 島中有五家, 其人言語類漢人, 衣鹿皮, 火田而耕, 以漁獵爲業, 濟州民二十餘口, 新往居之. 島有六船, 其一船常在海中, 以候望爲事.」

54) 『성종실록』 권268, 성종 23년 8월 10일 무신조 「以高益堅等招辭考之, 平安道及濟州民, 多有逃入海浪島者, 請遣有武才諳練朝官刷還, 輸之.」

55) 한영국, 『두모악고』, 812쪽

56) 『탐라지』, 濟州牧 奴婢條.

위 기록에서도 남자 장정에 대한 역이 너무나 무거워 제주목·정의·대정현의 남자들이 육지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과중한 역에 시달리던 제주 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주를 떠나가기 시작하여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할 양인(良人)과 정병(正兵), 진상역을 담당해야 할 공천(公賤)들까지 역을 피해 전라도 연변의 여러 고을로 옮겨가 살고 있었다.⁵⁷⁾

제주는 바다로 둘러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중요한데, 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연변 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미 본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추쇄(推刷)하여 집계한 것이 양인(良人) 91, 정병(正兵) 3, 선군(船軍) 12, 공천(公賤) 29, 사천(私賤) 17입니다. 그 중에서 사천과 신역(身役)이 없는 양인은 억지로 돌아오게 할 것 없으나, 군역(軍役)이 있는 사람과 공천은, 청컨대 모두 쇠환(刷還)하게 하소서.⁵⁸⁾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제주가 왜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방어에 힘써야 하는데, 제주 민들은 양인, 군인, 노비 할 것 없이 육지로 떠나버림으로써 군역을 진 자와 공노비들을 되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지로 나간 제주 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성종대에 수천 명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현종 5년(1664)에 충청 감사 이익한(李翊漢)이 “신이 일찍이 제주를 맡고 보니, 본주의 각사노비(各司奴婢)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⁵⁹⁾라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많은 제주 민들이 신역

57)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2001), 157쪽.

58)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緊, 而近因年荒, 軍民流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已令本道觀察使推刷, 計得良人九十一、正兵三、船軍十二、公賤二十九、私賤 十七. 其私賤及無役良人, 則不須勒還, 軍役人及公賤, 請皆刷還.」

59)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 5년 11월 13일 경자조 「臣曾任濟州, 見本州各司奴婢出陸居生者, 其數近萬.」

과 각종 공물 상납을 견디다 못해 제주를 떠나간 것으로 보인다. 제주 민들의 유이로 인해 제주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떠나간 제주민의 부역까지 더하여져서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은 또한 그렇게 떠나가게 되니 유민 발생의 악순환은 그칠 줄을 몰랐다. 제주의 인구는 세종 17년(1435)에 63,093 명이었다. 하지만 제주유민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현종 13년(1672) 통계에 따르면 29,578명으로 제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민의 유이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자 중앙정부는 전라도·경상도에서 제주유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붙잡아 제주도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Ⅲ. 제주유민의 사회적 지위 변화

제주를 떠난 유민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유민은 그들에 대한 호칭이 따로 있을 만큼 다른 지방민들에게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성종실록』 성종 8년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 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며,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⁶¹⁾

60)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 17년(1435) 제주 인구는 63,093이었다. 그러나 현종 13년(1672) 당시 제주의 인구는 29,578명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현종실록』권20, 현종 13년 10월 30일 신미조 「濟州三邑, 元戶八千四百九十, 人口男一萬二千五百五十七口, 女一萬七千二十一口。」

61) 『성종실록』 권83, 성종8년 8월 5일 기해조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恒以釣魚採藿爲業。」

이렇듯 제주유민은 언어와 의복이 달랐을 뿐 아니라 습속 또한 이색적이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주유민들은 크게 세 부류의 집단으로 그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어 갔다. 첫 번째 집단은 해당지역의 일정한 역인 포작인(鮑作人) 역할을 하며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갔던 부류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제주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뛰어난 선조술(船組術)과 항해술(航海術)을 인정받아 수군(水軍)으로 편입된 부류이다. 세 번째 집단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여 배에서 생활하며 떠돌아다닌 부류이다.

첫째, 해당지역의 포작인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부류에 대해서는 『성종실록』의 일련의 기사⁶²⁾에서 잘 드러난다.

- (2) 제주 사람으로서 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는, 수령(守令)이 고기잡이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조용히 자기 마음대로 하게하고 그 출입(出入)을 막지 아니하고 이사(移徙)하는 것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⁶³⁾
- (3) 소재지(所在地)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호적(戶籍)에 편입(編入)하게 하여서 마음대로 옮겨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한전(閑田)을 주어서 5년 동안 기한하여 복호(復戶)하고 그 구실[役]을 정하지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生業)에 안정하도록 하소서.⁶⁴⁾
- (4)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포작간이라고 일컫고 모든 진상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採捕)함으로 인하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략) 비록 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오로지 진상을 위

62) 『성종실록』 권85, 성종8년 10월 25일 기미조;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조;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4월 21일 기유조.

63)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조 「臣又聞濟州人來寓諸邑者, 守令利於漁獵, 從容自恣, 出入無防, 遷(徙) [徒] 無禁。」

64)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조 「請令所在諸邑編於戶籍, 不使隨意遷徙, 給閑田限五年復戶, 毋定其役, 使之安業」

하여 해산물을 채포하였으니, 역이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⁶⁵⁾

- (5)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과 제주 사람들을 정역(定役)한 일은 만약 포작간을 삼아 해물을 채취하여 진상(進上)에 이바지하는 것도 신역(身役)이니,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에서 추쇄(推刷)하여 녹안(錄案)하고, 평소 무휼(撫恤)하여 그들이 생업(生業)에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⁶⁶⁾

그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유민들이 고기잡이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에 해당 고을의 수령이 묵인하거나 그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과 차라리 소재지의 호적에 편입시켜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며 그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것을 얻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고을 수령들이 이들에게 의뢰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는 이들을 돌려보내야하는 지방수령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돌려보낼 마음이 없는데 있었다. 더군다나 한편에서는 이미 그들은 해당지역의 정역의 의무를 지고 신역에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방의 수령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유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결코 막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면 그들로부터 각종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들은 어류는 물론 각종 어패류를 잠수하여 채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수령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머물기를 바라기까지 하였다.⁶⁷⁾ 더욱이 물살이 비교적 급격한 전라·경상도 해안에서도 제주유민들이 지닌 잠수 실력은 바다 속 해산물 채취 작업을 더욱 순조롭게

65)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不農業, 專以捕魚資生, 故諸邑守令, 稱爲鰓作干, 凡進上海物, 專賴此人捕採, 因而愛護之, 其人亦愛守令, 得安其生.(中略) 雖不定役, 專爲進上捕採海物, 則不可謂之無役也.」

66)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4월 21일 기유조 「沿海諸邑濟州人定役事, 則若定爲鰓作干, 採捕海物, 以供進上, 亦是身役, 當於所居邑 推刷錄案, 常加撫恤, 使得安業可也.」

67)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59쪽.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수령들은 그들을 돌려보낼 마음이 더더욱 없었던 것이다.⁶⁸⁾

그러므로 제주를 떠나 양남 연해에 자리 잡은 제주유민들은 이곳에서 포작인 등의 역을 담당하면서 해당지역의 정식주민으로 자자손손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영국의 「'두모악'고」에서는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을 분석하여 이들이 어떻게 해당지역에서 일정한 지위를 지니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⁶⁹⁾ 요컨대 제주유민이 해당지역의 일정 역을 담당하며 정식 주민으로 정착한 시기는 18세기 초이며, 제주유민이 천인에서 양인(良人)화 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⁷⁰⁾

둘째, 수군에 편입되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던 제주유민에 관해서는 『성종실록』⁷¹⁾과 『중종실록』⁷²⁾에 나타난다.

(6) 그들이 사용하는 배[舟楫]들은 튼튼하고 치밀(緻密)하고 가볍고 날카로워서 왜적(倭賊)을 따라가 잡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하니, 청컨대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이것에 의거하여 만들도록 하여 위급한 데 쓰도록 하소서.⁷³⁾

(7)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

68) 다카하시 기미야끼(高橋公明), 「중세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민과 교류」 『탐라문화』 8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123쪽.

69) 1609년 · 1672년 · 1684년 · 1705년 · 1708년도 5식년분(式年分) 5책(冊)으로 나타나는 제주유민을 분석하여 처음출현에서 25년이 흐른 1078년도에는 184호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상황을 밝혀내고 있다. 제주유민은 대체로 천인으로 대우하여지고 있으며, 동족부락을 형성하여 생활하였다. 한영국, 「'두모악'고」, 816쪽.

70) 한영국, 「'두모악'고」, 821쪽.

71) 『성종실록』 권85, 성종8년 10월 16일 경술조;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 4월 19일 기해조;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2일 계해조.

72)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73) 『성종실록』 권85, 성종8년 10월 16일 경술조 「聞所使舟楫牢緻輕利, 追捕倭賊尤便, 請諸浦兵船, 依此造作, 以爲緩急之用。」

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중략)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⁷⁴⁾

(8) 곤양·진주·사천·고성에 두무악(頭無岳)등을 나누어 두면, 모두 배를 잘 부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나는 새와 같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⁷⁵⁾

(9) 제주의 3고을에서 육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전에 경차관(敬差官)이 파견되어 와서 본도로부터 쇄환(刷還)해 갔습니다. 우수영(右水營)에 등록되어 있는 포작한(鮑作漢)들도 쇄환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⁷⁶⁾

그 내용은 제주 민들이 사용하는 배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가벼우며 빨라서 왜적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각 포구의 병선 역시 이와 같이 제작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미 제주유민들은 배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바다를 방어하는 군사로 활용하자는 건의도 보인다. 또한 제주유민은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니 곤양, 사천 등 해안지방에 분치시켜 두었다가 위급할 때 그들을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중종실록』의 기사는 이미 우수영에 등록되어 군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유민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지역의 수령과 수군 책임자들이 제주유민을 본 고장인 제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아 조선정부가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직접 지휘하면서 제주의 세 고을에서 육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제주로 강제로 끌고

74)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 4월 19일 기해조 「但此輩既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既已立法, 仍令本官着籍爲兵, 如水軍之制而疎其番遞, 優其保數 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75)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2일 계해조 「昆陽、晉州、泗川、固城分置頭無岳等, 皆能操舟逐浪, 正如飛鳥, 撫以安業, 緩急可用, 不可置之度外而不用也.」

76)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濟州三邑人物, 流移出陸者, 前日敬差官發遣, 刷還本(道) [島], 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在刷還中.」

가는 사례도 있었다.⁷⁷⁾ 수군절도사 유홍(柳泓)이 “저들이 모두 본도에 서 쇠환되면 배를 부릴 사람이 없게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제주유민들은 이미 수군으로 편입되어 배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어 주로 배에서 생활하며 떠돌아 다닌 제주유민 관해 살펴보겠다. 이들에 관한 기사 역시 『성종실록』⁷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집단들은 주로 고기잡이로 생활하였으며, 만약 바다에서 생산물을 얻지 못하면 주변인근 마을까지 약탈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0) 제주에서 육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직 고기잡이[漁獵]만을 일삼으니, 대저 풍랑(風浪)의 사이에서 고기잡이하더라도 반드시 많이 잡을 수는 없으므로, 만약 이득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침탈(侵奪)하게 되는데,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⁷⁹⁾

(11) 제주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들은 본래 향산(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을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 부득이 연해(沿海)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활해 가니, 진실로 엄한 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또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⁸⁰⁾

77) 『성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濟州三邑人物, 流移出陸者, 前日敬差官發遣, 刷還本(道) [島] 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在刷還中其時柳泓爲水使, 啓以爲, 彼人等, 皆被刷還本(道) [島], 無操舟人。」

78)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조;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79)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조 「濟州出來人 不事農業, 專以漁獵爲事, 夫獵於風浪之間, 未可取必, 如不得利, 其侵於民, 勢使然也。」

8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濟州出來鮑作人等, 本無恒産,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即逃

(12) 하루아침에 상부(常賦)의 역을 정하면 역을 피해 도망쳐 흩어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적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⁸¹⁾

(13) 제주의 포작인으로 전라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 자들이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해적(海賊)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본도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⁸²⁾

이는 생계를 위한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배 위에 집을 지어 처자를 거느리고 다니며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니 정부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일시적으로 해안가 지역에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니 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이들에게 역을 정하면 곧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니 정부에서는 수적(水賊)⁸³⁾이 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 부류에 속하였다. 연변에 사는 제주유민들이 거처가 일정치 않으므로 해적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모두 제주유민들이 해적이 아닌지 의심하는 내용을 엿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주변의 해적 세력들과 규합하여 약탈을 일삼기도 하였다.

散. 雖去就無常, 不得已沿海依止, 賣魚資生, 固不可嚴法以治之, 亦不可無法以馭之。」

81)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而一朝定爲常賦之役,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也.」

82)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濟州鮑作人, 散接全羅沿邊諸邑者頗多, 此輩彼此往來無定, 前此遇有海賊, 本道人, 皆疑此輩.」

83) 다카하시 기미야끼은 수적을 조선정부가 왜구와 구분해서 부르던 명칭으로 보았으며, 제주의 유민 중 일부가 수적으로 활동하였고 더 나아가 제주유민과 왜인들과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 또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왜적활동의 정당성의 측면으로 보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글이므로 해석에 있어서 필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요망되는 논문이기도하다. 본 연구자는 제주유민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에서 제주유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해석적 차원에서 본 논문을 인용하였다. 다카하시 기미야끼(高橋公明), 「중세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민과 교류」, 112~113쪽.

이런 현상은 비록 제주유민들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유민의 발생 이면에는 언제나 이러한 과정들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굶어 죽거나, 거지·빈민·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민심소요·사회불안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⁸⁴⁾ 그러므로 조선 전반에 걸쳐 유민 발생은 조선 정부의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에서는 제주유민에 대하여 경상도·전라도 두 도(道)에 떠돌아다니는 인민의 성명을 기록하여 제주 세 고을의 호적과 맞추어 보도록 했다.⁸⁵⁾

즉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범을 엄하게 정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고을과 이르는 고을에서 일일이 서로 보고하여 즉시 되돌려 보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성종실록』 성종 8년 11월의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4) 경상도·전라도 두 도에 유이하는 인민의 성명(姓名)을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가서 세 고을의 호적(戶籍)과 빙고(憑告)해서 계문(啓聞)하라. 만일 호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거든 두도(道)의 현재 있는 고을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啓聞)하라.⁸⁶⁾

(15) 여러 고을의 포작인을 한결같이 모두 녹안(錄案)하게 하였다가, 무릇 출입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행장(行狀)을 빙거(憑據)하게 하고, 만약 부득이 옮겨 살게 되면 본래 살던 고을과 새로 살게 된 고을에서 서로 이문(移文)하여 개안(改案)하도록 해서 임의(任意)로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⁸⁷⁾

(14)과 (15)의 기록에서는 제주유민을 조사하여 제주 세 고을의 호

84) 정형지,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72 (1996), 185쪽.

85)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59쪽.

86)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조 「慶尙、全羅兩道流移人民姓名, 傳寫齎去, 憑告三邑戶籍啓聞. 萬一不在戶籍者, 兩道時存諸邑闕實啓聞.」

87)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令邊將及沿邊諸邑鮑作人, 一皆錄案, 凡有出入, 須憑行狀, 如或不得已移居, 則元居新接官, 官互相移文改案, 毋得任意橫行爲便.」

적과 비교하라는 내용이며, 여러 고을의 포작인들 즉 제주유민의 명부를 만들어 기록하였다가 출입 시 녹안(錄案) 즉 명부대장과 비교하여 유이하는 것을 엄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제주유민의 발생과 양남 연해의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성종 21년(1490) 10월에 제주 진상방물선이 해적에게 피탈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제주유민에 대한 녹안(錄案)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녹안이 기록되지 않고 새로 온 제주유민에 대해서는 모두 원주지로 돌려보낼 것을 검토하게 되어 유민에 대한 쇠환책(刷還策)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제주유민의 유이 실태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주유민들은 양남 연해에 정착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해랑도까지 정착하고 있었다. 주로 그들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세 개의 집단으로 지위가 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정한 지역의 포작으로 역을 맡아 정착한 부류로, 수군으로 편입되어 생활하는 부류로, 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여 떠돌이 집단으로 생활한 부류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제주유민의 발생은 계속되어 증가하고 있었으니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IV. 제주유민에 대한 대책 - 출륙금지 정책

조선정부에서는 제주유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정부의 직접적인 유민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민을 통제하고 정착시켜 부세수취 체제 내로 재 편입을 도모하기 위한 유민 통제책(統制策)을 들 수 있다. 둘째, 유민을 본적지로 되돌리기 위한 유민 환송책(還送策)이 있었다. 셋째, 유민을 구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유민 안집책(安集策)이 그것이다.

조선정부는 유민의 발생을 줄이고자 그들을 쇄환(刷還)하기도 하고 혹은 처벌을 가하기도 하면서 유민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유민현상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유민의 발생 원인이 경제적 궁핍에 있다고 생각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대대적인 진휼을 통해 예방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⁸⁸⁾ 하지만 제주 민에 대한 올바른 현실 파악과 생활안정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지 않는 한, 유민은 날로 증가하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유민의 증가는 남아있는 제주 민들에게 한층 부담을 증대시켜 이들의 유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군다나 양남 연해의 치안 또한 문란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제주유민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성종 16년(1485) 녹안(錄案)을 정역하게 하는 조치를 반포하기에 이른다. 녹안을 만들고 노인을 발급하여 제주의 유민들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진상방물선이 해적에게 피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종실록』 성종 21년(1490) 10월 24일 기록에 보면 “제주사람으로 진상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으니, 적변(賊變)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護衛)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다.⁸⁹⁾ 상황이 위급하게 전개되자 정부에서는 제주민의 녹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기록되지 아니한 새로 들어온 제주유민들은 모두 원주지로 돌려보낼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부는 수시로 육지에 들어오는 제주유민을 돌려보내거나 귀향시키는 한편, 제주 민의 불법 출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의 항구를 조천(朝天)과 별도(別刀)로 한정시켜 통제를 가하였다.⁹⁰⁾ 이러한 조치

88) 오창훈, 「조선초기 유민연구」, 34~35쪽.

89)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濟州人, 齎奉進上方物出來者, 爲倭賊所奪, 賊變寢息間, 請抄軍護涉.」

90) 을묘년 이후에는 사선(私船)이 마음대로 출입하는데, 섬 가운데 부역을 도피하는 자가 가끔 배를 타고 물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조천·별도 두진(津)에서만 방선(防船)을 허가토록하며, 방선하는 날에 목사군관(牧使軍官) 한사람이 장부와 대조하여 점검하는 데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고 한다. 『남사록』, 156쪽.

에도 불구하고 제주유민의 발생은 감소되지 아니하였다.⁹¹⁾

『중종실록』에 따르면 “제주는 인물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공허하여 진다.”⁹²⁾ 또한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있다.⁹³⁾ 이와 같이 제주유민의 증가로 인해 조선정부에서는 제주유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를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곧 출륙금지(出陸禁止) 정책이었다. 『인조실록』 인조 7년(1629) 8월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⁹⁴⁾

제주유민의 발생으로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군액이 감소되자, 비국(備局) 즉 비변사가 제주민이 육지로의 출입을 금할 것을 청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민의 출륙을 금지하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나 과거 응시자와 공물·진상물의 운반 책임자와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출륙이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출륙금지가 내려진 가운데도 제주의 유민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유민에 대한 쇄환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제주 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이들의 출륙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남정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제주유민에 대한 출륙금지는 분명 다른 지방의 유민에 대한 대응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다른 지방에서 유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세의 감면이나 진휼정책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졌던 반면,

91) 한영국, 『두모악』, 812쪽.

92)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 2월 11일 을묘조 「濟州人物流亡, 日就空虛, 刷還之舉, 在所當急.」

93)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濟州三邑, 居民日就流亡, 幾至空虛.」

94)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3일 을축조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제주지방은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보다 강제성을 띤 정책 즉 유민에 대한 통제책을 적용하였다. 이는 제주 지역이 갖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제주는 국토방위의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조선 정부는 명나라와의 말 무역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므로 말의 주요 공급처인 제주를 경제적 목적에서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제주는 꿀이나 전복·해산물 등 공물과 진상의 주된 생산지라는 점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정부에서 제주유민에 대한 대응은 다른 지방에 비해 강경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정부는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제주 민이 제주를 떠날 수 없도록 출륙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유민의 발생 배경을 당시 정치·사회·경제적 관계 속에서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유민들의 유류 후 정착실태, 그리고 사회적 지위 변화 과정과 정부의 유민대책인 출륙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유민의 발생을 우선 정치적 배경으로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에서 조선중기는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 정치가 강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해당되었다. 그동안 제주는 향촌질서로서의 자치적 성격이 짙은 사회였으나 중앙위주의 행정개편과 그에 따른 지배질서의 운용은 중앙의 수령과 지방의 토호라는 이중적 지배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제주 민들에게 이중의 수탈체제로 작용하였으며 그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

해갔다. 반면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빈번한 왜구의 침입을 들 수 있다. 그 규모면에서도 훨씬 커지고 행동에 있어서도 대범해진 왜구들은 살인과 방화·약탈 일삼았다. 왜구는 제주 주변의 바다에 늘 잠적해 있어서 제주 민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방어시설이 필요하였고 이에 여러 가지 부역에 동원되었다. 게다가 제주 민들은 군량이나 군포의 부담으로 또한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 제주의 전반적인 정치현실은 제주유민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제주유민 발생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당시 자주 발생했던 자연재해로 인한 굶주림과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른 수취제도를 들 수 있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에서 의도한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수취체제와는 다른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제주의 특성을 구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요역과 특산물에 대한 진상과 관련된 수취가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당시 제주 사회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던 전복, 말, 굴에 관련한 진상은 막대했으며 그에 따른 폐단 또한 심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제주 민들은 지나친 부역과 진상공물에 대한 부담은 견디기 어려웠고 현실 타개책으로 선택한 것이 유민의 삶이었다.

제주유민들이 주로 정착한 곳은 주로 바닷가 주변의 진라·경상도 연안이었으며 심지어 중국 해랑도까지 유이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유민들에게는 따라다니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른바 ‘두무약’ ‘두독야지’ ‘포작인’ 등으로 불리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당지역의 사람들과는 의복, 풍속 그리고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고기잡이와 전복과 해산물 채취를 주업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정착한 지역의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해상활동의 능력인 잠수기술이라든지 배를 다루는 실력을 인정받아 해당고을에 주민으로, 수군으로 정착해 갔다.

제주유민들은 세 부류의 집단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켜 나갔다. 첫째, 해당지역에서 주로 고기잡이,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여 그 지역의 일정한 역을 담당하며 정착한 부류의 집단들이며, 둘째, 그들이 지녔던 배를 잘 만드는 기술과 뛰어난 항해술을 인정받아 수군으로 편입된 집단이며, 셋째 끝내 어떤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여 떠돌이 삶을 추구하던 떠돌이 집단으로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켜 나갔다.

유민의 발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실타개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의 수입원의 상실이자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유민의 발생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주유민의 발생에 대해 조선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였다. 제주유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어 녹안물을 작성하고 제주 민을 쇠환하는 등 강력한 통제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민의 증가는 계속되었고 제주의 세 고을은 날로 황폐해지니 조선정부에서는 제주 민과 유민에 대하여 출륙금지라는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제주가 갖는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유민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아진다. 오히려 제주 민에 대한 더욱 강화된 통제와 수탈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궁극적으로 조선정부에서는 출륙금지라는 통제정책이 효과적인 제주유민에 대한 대책이었을지 모르나 제주 민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억압구조였으며 200여 년간 다른 지역과의 단절로 인해 제주 사회·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남겼다.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changing
social status of Displaced Jejuians
in the Mid-Joseon Dynasty

Jang, Hye-Ryun || J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istory)
maggil080@yahoo.co.kr

The Migration of the Jeju people occurred in the mid-Joseon period between the 15th and 17th centuries when Joseon's centralized government was being consolidated.

The migration of residents occurs when a government is unable to control political and economic adversities in society. Though the development of such movements appear to progress mildly, the Joseon ramifications they have on society as a whole are tremendou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expressed grave concerns about this development and deliberated on measures to stabilize the disturbance.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of the Jeju Migrants and the government's subsequent decision to forbid the residents to go outside Jeju Island, the study on them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time has not been

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closely examining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migration of the Jeju people in tandem with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migration and the realities of the migrants.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t that time are also attributed to adding to sufferings on the people. On top of the heightened lev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taxes, particularly the excessive tribute tax and corvee labor obligations weighed heavily on them. Coupled with frequently occurring natural disasters, leading to lean harvests, the people were unable to stand the onerous burdens and took up lives of wandering.

They ended up mostly in the coastal region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and advanced as far as Harangdo in China. They were separately called 'Dumoo-ak', 'Dudok-yaji' and 'Pojak-in' because their clothing, customs and language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provinces. These migra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are those who settled in a region, serving their duties as residents; the second are those who settled in a region as part of naval forces with their skills in building ships and sailing gaining recognition; and the third are those who moved from place to place with no fixed abode, turning into vagabonds.

Eventually, though the policy to prevent the Jeju people from leaving the island might have been an effective measure in dealing with the migration matter, this hugely oppressive policy had the effect of isolating the inhabitants of Jeju from other regions for about 200 years, having substantial repercussions on the society and the culture of Jeju.

Key words : migration of the Jeju people (제주유민), Dumoo-ak (두무악), Pojak-in(포작인), oppressive policy(통제정책), isolating the inhabitants of Jeju (출륙금지)

논문투고일	2008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2일

K C I